

문서번호	시설안전팀-70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03.15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사장
			03/15
최유식	박성규	김승호	박현출
협 조	차장	임재근	
감 사	감사실	감사실	

'16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용역 시행(안)

2016. 03.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

'16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용역 시행(요약보고)

추진목적

- 소방관련 법령 이행 및 소방시설 제 기능 유지
- 가락물과 도매권역 자체점검 통합 발주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관리 감독 능률향상, 과업이행 전문성(연속성) 확보

※ 소방법에 의한 자체점검이란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점검대상 및 범위

구역	구분	연간 횟수	점검 기한	비고
가락물	종합정밀점검	2회	'16. 06. 30. '16. 12. 31.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기한 설정
도매권역 (양곡시장포함)	종합정밀점검	1회	'16. 04. 30.	
	작동기능점검	1회	'16. 10. 31.	

용역 추진 계획

계약의뢰 및 계약	용역 착수	구역별 점검시행 등	용역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팀 사전심사 · 계약 의뢰 · 계약자선정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계 승인 · 착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권역 종합 : 4월 · 가락물 종합 : 5월 · 도매권역 작동 : 10월 · 가락물 종합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도서 승인 · 점검결과 보고 및 관할소방서 제출 ※ 구역별 완료 시 마다
3월 중	4월 초	4월 초 ~ 11월 말	12월 중

■ 소요 예산 : 168,861천원(VAT 포함)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6년 12월 20일까지

점검결과 조치

- 각 구역별 점검 기한 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송파소방서 제출
- 단순보수(소모품류) 사항은 소방점검 업체가 즉시 보수하여 소방시설 기능 유지
 - 소요자재는 관급처리(화재감지기, 유도등, SP헤드 등 소모품 상비)
- 전문공사가 필요한 보완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공사 발주

‘16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용역 시행(안)

신축 가락물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최초로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년 시행중인 도매권역과 가락물 소방점검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기술용역의 품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기술용역 개요

■ 추진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및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 『2016년 소방계획서』 시설안전팀-272호(‘16.02.29)

■ 점검 대상 및 범위

구역	구분	연간 횟수	점검 기한	비고
가락물	종합정밀점검	2회	‘16. 06. 30. ‘16. 12. 31.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도매권역 (양곡시장포함)	종합정밀점검	1회	‘16. 04. 30.	기준으로 점검기한 설정
	작동기능점검	1회	‘16. 10. 31.	

■ 소요 예산 : 168,861천원(VAT 포함)

- 예산 과목 : 소방시설안전진단비(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지급수수료)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6년 12월 20일까지

II 추진 계획

■ 발주 방법 : 통합 발주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가락물 소방점검이 건축물 사용승인(‘15년 6월) 이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시행 중인 도매권역 소방점검과 통합 발주하여 기술용역의 품질과 전문성 확보 필요

- 점검기술 전문성 확보 및 소방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점검대상 시설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과업이행 연속성 확보
- 행정업무 간소화 및 관리감독 능력 향상

■ 발주 방안 : 제한경쟁입찰(동일실적) 적용

소방점검은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시행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기준 설정 필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 분	2016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용역	
입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입찰(단년도계약)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약 불가 • 제한경쟁(동일실적)
참가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연면적 20만㎡ 이상(하나의 건축물에 한함)의 특정 소방대상물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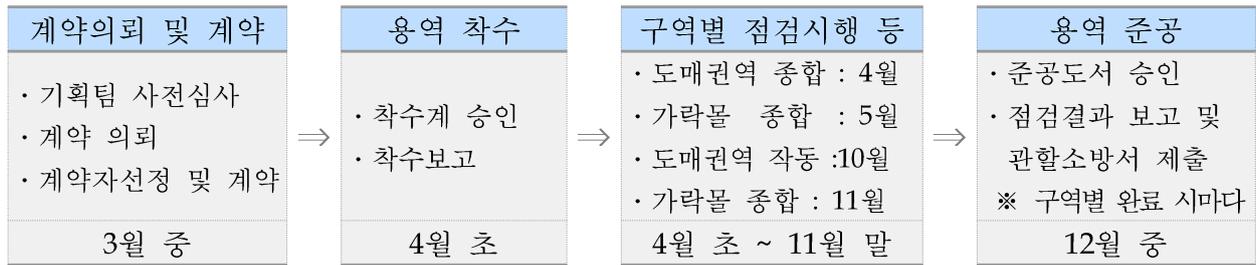
※ 가락몰 : 연면적 20만㎡ 이상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예외
- 기술용역 2억원 미만으로 서울시 사전계약심사 예외

■ 기타사항

- 소방점검 업체(선정 후) 즉시 점검 착수
 - 건축물 구조 및 위치, 건물 특성, 임대점포 영업형태, 소방시설 현황 파악 등 업무협조
- 점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
 - 가락몰 임대점포 오픈 전 소방시설 점검이 가능토록 점검인력 및 일정 조정 등
- 소방시설 개선
 - 자동소화설비 미설치 구역, 지하층 및 소방차 진입 불가 구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시설 개선 검토

■ 향후 추진 절차



Ⅲ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보고

- 각 구역별 점검 기한 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송파소방서 제출

■ 미비사항 즉시 처리

- 단순보수(소모품류) 사항은 소방점검 업체가 즉시 보수하여 소방시설 기능 유지
 - 소요자재는 관급처리(화재감지기, 유도등, SP헤드 등 소모품 상비)
- 전문공사가 필요한 보완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공사 발주 시행

- 붙임
1. 용역개요 1부.
 2. 용역원가산출서 1부.
 3. 산출기초조서 1부.
 4. 예정공정표 1부.
 5. 소방점검 및 계약관련 법령 1부.
 6. 일상감사요청서 1부.
 7. 사전심사의뢰서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설계도서(별첨) 1부. 끝.

<붙임 2>

용역원가산출서

1. 과업명 :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2. 산출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4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 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소방시설 검정수수료 기준표」
- 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에 따른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및 적용(16년 1월 1일부터)

구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 및 기타	255,025원	184,257원	150,083원

마. 자체점검 시행 구분 및 점검 기한

구분	가락물	가락시장(도매권역)
종합정밀점검	‘16. 06. 30. 까지 ‘16. 12. 31. 까지	‘16. 04. 30. 까지
작동기능점검 (소화배관 기밀시험 포함)	-	‘16. 10. 31. 까지

※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점검 기한 설정

3. 원가산출서

가. 점검인력 배치기준

구분	연간횟수	소요인원	소요일수	비고
종합정밀점검(가락물)	2회	75명×2회=150명	15일×2회=30일	산출내역 참고
종합정밀점검(도매권역)	1회	95명	19일	
작동기능점검(도매권역)	1회	80명	16일	
소화배관 기밀시험(도매권역)	1회	50명	10일	

나. 산출내역

1) 총괄표(부가세 포함)

구분	종합정밀점검 (가락물)	종합정밀점검 (도매권역)	작동기능점검 및 소화배관 기밀시험 (도매권역)	용역비 합계
금액	84,981,160원	53,821,460원	70,308,590원	209,111,210원

2) 종합정밀점검(가락물)

구 분	세부내역	금액(원)
① 직접인건비	<p><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가락물'></p> <p>1. 점검 소요일수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인력(5명/일) : 1단위(3명) + 보조인력(2명) 추가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1명) + 보조인력(2명) ● 점검한도면적(16,000㎡/일·점검인력) -종합정밀점검(10,000㎡)+보조인력(3,000㎡×2) ● 점검면적(232,053.8㎡) A.실제 점검면적 : 210,958㎡(가락물) B.가감계수(판매시설) : 210,958㎡×1.1=232,053.8㎡ ● 점검일수(15일) -232,053.8㎡÷16,000㎡/일=14.5일 <p>2. 소요일수에 따른 인건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기술자 : 255,025원×1명/일×15일=3,825,375원 ● 중급기술자 : 184,257원×1명/일×15일=2,763,855원 ● 초급기술자 : 150,083원×3명/일×15일=6,753,735원 <p>⇒ 소 계 : 13,342,965원</p>	13,342,965원
② 직접경비	● ①×10% : 13,342,965원×0.1=1,334,297원	1,334,297원
③ 제경비	● ①×115% : 13,342,965원×1.15=15,344,410원	15,344,410원
④ 기술료	● (①+③)×30% : (13,342,965원+15,344,410원)×0.3=8,606,213원	8,606,213원
소 계(십원단위 절삭)		38,627,800원
가락물 연2회 점검 시행(38,627,800원 × 2회)		77,255,600원
부 가 세		7,725,560원
합 계		84,981,160원

3) 종합정밀점검(도매권역)

구 분	세부내역	금액(원)
① 직접인건비	<p><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도매권역'></p> <p>1. 점검 소요일수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인력(5명/일) : 1단위(3명) + 보조인력(2명) 추가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1명) + 보조인력(2명) ● 점검한도면적(16,000㎡/일점검인력) -종합정밀점검(10,000㎡)+보조인력(3,000㎡×2) ● 점검면적(288,401.8㎡) A.실제 점검면적 : 291,315㎡(가락·양곡시장) B.가감계수(판매시설) : 291.315㎡×1.1=320,446.5㎡ C.제연설비 미설치 : 320,446.5㎡×0.1=32,044.7㎡ D. B-C : 320,446.5㎡-32,044.7㎡=288,401.8㎡ ● 점검일수(19일) -288,401.8㎡÷16,000㎡/일=18.03일 <p>2. 소요일수에 따른 인건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기술자 : 255,025원×1명/일×19일=4,845,475원 ● 중급기술자 : 184,257원×1명/일×19일=3,500,883원 ● 초급기술자 : 150,083원×3명/일×19일=8,554,731원 <p>⇒ 소 계 : 16,901,089원</p>	16,901,089원
② 직접경비	● ①×10% : 16,901,089원×0.1=1,690,109원	1,690,109원
③ 제경비	● ①×115% : 16,901,089원×1.15=19,436,252원	19,436,252원
④ 기술료	● (①+③)×30% : (16,901,089원+19,436,252원)×0.3=10,901,202원	10,901,202원
소 계(십원단위 절삭)		48,928,600원
부 가 세		4,892,860원
합 계		53,821,460원

4) 작동기능점검 및 소화배관기밀시험(도매권역)

구분	세부내역	금액(원)
① 직접인건비	<p><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p> <p>1. 점검 소요일수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인력(5명/일) : 1단위(3명) + 보조인력(2명) 추가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1명) + 보조인력(2명) ● 점검한도면적(19,000㎡/일.점검인력) -작동기능점검(12,000㎡)+보조인력(3,500㎡×2) ● 점검면적(288,401.8㎡) A.실제 점검면적 : 291,315㎡(가락·양곡시장) B.가감계수(판매시설) : 291,315㎡×1.1=320,446.5㎡ C.제연설비 미설치 : 320,446.5㎡×0.1=32,044.7㎡ D. B-C : 320,446.5㎡-32,044.7㎡=288,401.8㎡ ● 점검일수(16일) -288,401.8㎡÷19,000㎡/일=15.2일 <p>2. 소요일수에 따른 인건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기술자 : 255,025원×1명/일×16일=4,080,400원 ● 중급기술자 : 184,257원×1명/일×16일=2,948,112원 ● 초급기술자 : 150,083원×3명/일×16일=7,203,984원 ⇒ 소 계 : 14,232,496원 <p><소화배관 기밀시험></p> <p>1. 기밀시험 대상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수산물 1층 준비작동식SP설비 2차측 배관 ● 방호구역 : 청과동(20개소), 수산물(6개소) -방호구역 기준 : 바닥면적 3천㎡이내마다 구획 <p>2. 기밀시험 소요일수 및 소요인원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일수(10일) : 5년 평균 기밀시험 투입일수 ● 소요인원(5명/일) : 5년 평균 기밀시험 투입인원 ● 2011년~2015년(과거 기밀시험 용역결과 반영) <p>3. 소요일수에 따른 인건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급기술자 : 184,257원×1명/일×10일=1,842,570원 ● 초급기술자 : 150,083원×4명/일×10일=6,003,320원 ⇒ 소 계 : 7,845,890원 <p><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소화배관 기밀시험></p> <p>⇒ 합 계 : 22,078,386원</p>	22,078,386원
② 직접경비	● ①×10% : 22,078,386원×0.1=2,207,839원	2,207,839원
③ 제경비	● ①×115% : 22,078,386원×1.15=25,390,144원	25,390,144원
④ 기술료	● (①+③)×30% : (22,078,386원+25,390,144원)×0.3=14,240,559원	14,240,559원
	소 계(십원단위 절삭)	63,916,900원
	부 가 세	6,391,690원
	합 계	70,308,590원

4. 설계자 소속 : 건설안전본부 시설안전팀 3급 임재근(인)
시설안전팀 4급 최유식(인)

5. 설계심사자 소속 : 건설안전본부 시설안전팀 팀장 박성규(인)

<붙임 4>

예 정 공 정 표

1. 과 업 명 :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2. 과업 기한 : 계약일로부터 '16년 12월 20일까지

(단위 : 월)

공 종 일 정	계약일로부터					비 고
	2016					
	4	6	8	10	12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락양곡시장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가락물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가락양곡시장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보수), 소화배관 가압시험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가락물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붙임 5>

소방점검 및 계약관련 법령

관련 규정	주요 내용																																																																								
<p>■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장은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p>■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p>■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직접인건비)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직접경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제9조(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 제10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p>■ 엔지니어링사업 기술등급에따른노임단가</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50호(2015.12.17)</p> <p style="text-align: center;">201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p> <p style="text-align: center;">본 협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p> <p>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기계/설비</th> <th>전기</th> <th>정보통신</th> <th>건설</th> <th>환경</th> <th>원자력</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사</td> <td>302,508</td> <td>350,092</td> <td>343,430</td> <td>348,180</td> <td>357,318</td> <td>489,203</td> <td>321,854</td> </tr> <tr> <td>특급기술자</td> <td>312,387</td> <td>377,366</td> <td>341,254</td> <td>264,306</td> <td>263,145</td> <td>426,898</td> <td>250,025</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247,763</td> <td>223,803</td> <td>219,797</td> <td>209,485</td> <td>204,180</td> <td>298,148</td> <td>218,132</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200,366</td> <td>177,160</td> <td>176,287</td> <td>190,910</td> <td>183,703</td> <td>257,578</td> <td>184,257</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171,713</td> <td>178,163</td> <td>153,175</td> <td>149,647</td> <td>150,977</td> <td>202,770</td> <td>150,083</td> </tr> <tr> <td>고급숙련기술자</td> <td>189,033</td> <td>189,379</td> <td>169,825</td> <td>175,906</td> <td>159,267</td> <td>261,220</td> <td>161,120</td> </tr> <tr> <td>중급숙련기술자</td> <td>170,126</td> <td>160,064</td> <td>153,762</td> <td>148,700</td> <td>140,660</td> <td>207,626</td> <td>143,667</td> </tr> <tr> <td>초급숙련기술자</td> <td>157,450</td> <td>142,866</td> <td>125,508</td> <td>128,933</td> <td>133,165</td> <td>134,672</td> <td>132,161</td> </tr> </tbody> </table> <p>나. 평균근무일수 : 22일 다. 적용일 : 2016년 1월 1일 부터</p>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02,508	350,092	343,430	348,180	357,318	489,203	321,854	특급기술자	312,387	377,366	341,254	264,306	263,145	426,898	250,025	고급기술자	247,763	223,803	219,797	209,485	204,180	298,148	218,132	중급기술자	200,366	177,160	176,287	190,910	183,703	257,578	184,257	초급기술자	171,713	178,163	153,175	149,647	150,977	202,770	150,083	고급숙련기술자	189,033	189,379	169,825	175,906	159,267	261,220	161,120	중급숙련기술자	170,126	160,064	153,762	148,700	140,660	207,626	143,667	초급숙련기술자	157,450	142,866	125,508	128,933	133,165	134,672	132,161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02,508	350,092	343,430	348,180	357,318	489,203	321,854																																																																		
특급기술자	312,387	377,366	341,254	264,306	263,145	426,898	250,025																																																																		
고급기술자	247,763	223,803	219,797	209,485	204,180	298,148	218,132																																																																		
중급기술자	200,366	177,160	176,287	190,910	183,703	257,578	184,257																																																																		
초급기술자	171,713	178,163	153,175	149,647	150,977	202,770	150,083																																																																		
고급숙련기술자	189,033	189,379	169,825	175,906	159,267	261,220	161,120																																																																		
중급숙련기술자	170,126	160,064	153,762	148,700	140,660	207,626	143,667																																																																		
초급숙련기술자	157,450	142,866	125,508	128,933	133,165	134,672	132,161																																																																		

관련 규정	주요 내용																																																																																																						
<p>■ 소방시설검점수수료기준표</p>	<p>■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기준표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p> <p>A. 소방시설점검 수수료(VAT별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종대구별</th> <th colspan="2">3월(보통)</th> <th colspan="2">4월</th> <th colspan="2">5월</th> <th colspan="2">6월</th> <th colspan="2">7월</th> <th rowspan="2">비고 -소방대상물의 종대구구분</th> </tr> <tr> <th>보통</th> <th>특등</th> <th>보통</th> <th>특등</th> <th>보통</th> <th>특등</th> <th>보통</th> <th>특등</th> <th>보통</th> <th>특등</th> </tr> </thead> <tbody> <tr> <td>1류</td> <td>8333.3</td> <td>30,000.0</td> <td>10833.3</td> <td>12,816.7</td> <td>13333.3</td> <td>25,033.3</td> <td>15833.3</td> <td>18,750</td> <td>18,333.3</td> <td>21,666.7</td> <td rowspan="5">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11호</td> </tr> <tr> <td>2류</td> <td>9,080.9</td> <td>30,981.1</td> <td>11,838.2</td> <td>14,090.9</td> <td>14,456.5</td> <td>17,272.7</td> <td>17,272.7</td> <td>20,454.5</td> <td>20,000</td> <td>23,636.4</td> </tr> <tr> <td>3류</td> <td>30,000</td> <td>12,500</td> <td>13,000</td> <td>15,500</td> <td>36,000</td> <td>19,000</td> <td>18,000</td> <td>22,500</td> <td>22,000</td> <td>26,000</td> </tr> <tr> <td>4류</td> <td>31,111.1</td> <td>33,333.3</td> <td>14,444.4</td> <td>17,222.2</td> <td>17,777.8</td> <td>21,111.1</td> <td>21,111.1</td> <td>25,000</td> <td>24,444.4</td> <td>28,888.9</td> </tr> <tr> <td>5류</td> <td>32,500</td> <td>15,000</td> <td>16,250</td> <td>18,375</td> <td>30,000</td> <td>23,750</td> <td>23,750</td> <td>28,325</td> <td>27,500</td> <td>32,500</td> </tr> <tr> <td>마곡시(서대)</td> <td>30944.4</td> <td>35044.4</td> <td>37044.4</td> <td>44044.4</td> <td>44044.4</td> <td>59044.4</td> <td>53044.4</td> <td>62044.4</td> <td>58044.4</td> <td>73044.4</td> <td>중도주택 중 아파트</td> </tr> <tr> <td>1월 점검수수료(합)</td> <td>1,796,232</td> <td>1,796,232</td> <td>2,140,711</td> <td>2,340,711</td> <td>2,575,190</td> <td>2,575,190</td> <td>3,008,679</td> <td>3,008,679</td> <td>3,448,168</td> <td>3,448,168</td> <td></td> </tr> </tbody> </table> <p>※주1. 1월 점검가능면적, 점검면적수, 종대구분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참조 ※주2. 1월 점검수수료 산출근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예) 산출기준: (1월 투입 기술인력 × 특급1인, 중급1인, 초급1인 기준) [직접경비는 비상수 점검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특급1인 노임단가 253,025원 + 25,303원(직접경비10%) + 293,279원(재경비115%) + 104,491원(기타료30%) = 738,298원 * 중급1인 노임단가 184,257원 + 18,426원(직접경비10%) + 211,896원(재경비115%) + 118,846원(기타료30%) = 533,425원 * 초급1인 노임단가 150,089원 + 15,009원(직접경비10%) + 172,595원(재경비115%) + 96,803원(기타료30%) = 434,487원 * 계 (3인1조 × 1월) = 1,706,212원 (※1월 점검인원 3인 초과시 초급기술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주3. 기술자 대가 적용 환산표: 중급기술자- 1.0일 경우, 특급기술자(소방시설관리사)- 1.3847086배, 고급기술자- 1.183844027, 초급기술자- 0.814522687 ※주4.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월 점검수수료 산정기준: 5,000㎡ 미만은 30%, 5,000㎡이상 10,000㎡ 미만은 20% 범위 이내에서 산출된 점검수수료를 징할 수 있다. 단, 특정소대상설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정량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월 점검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주5. 상주점검 상주점검 업무대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시 아래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있어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재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여, 기타료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건비상대가는 별도 정산한다. 나. 상주 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초과로 하되, 중급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2명초과) 초과로 하고,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상주점검 투입 인력수(단위명) = 대상처의 연면적 / 50,000㎡ 다. 발전소의 배터인력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4개 조(기준용량 500MW × 4) 이하로 구성된 발전소 마다, 원자력 발전소는 2개 조(기준용량 700MW × 2) 이하로 구성된 단위 발전소 마다 선입은 중급 1명 보다는 초급 1명 계 2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4명 초과 배치되는 경우 그 중 1명 초과는 고급 초과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발주자 요구로 주검검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모 공방에 따라 추가 투입인력(일부는 가능인력 포함가능)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적용한다. 라. 종합정밀점검 및 차등가능정점은 본사 별도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실시 방법은 상기 ※주1 ~ ※주4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주6. 기타사항 가. 마후에 2개조과 견출 점검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나.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다. 점검수수료의 발생 : 월간시간(09:00~18:00)외 또는 공휴일(보,월요일 포함) 점검시는 점검수수료의 50% 발생한다. 단, 공휴일(보,월요일포함) 일과시간외의 점검의 경우에는 공휴일수수료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p>	종대구별	3월(보통)		4월		5월		6월		7월		비고 -소방대상물의 종대구구분	보통	특등	1류	8333.3	30,000.0	10833.3	12,816.7	13333.3	25,033.3	15833.3	18,750	18,333.3	21,666.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11호	2류	9,080.9	30,981.1	11,838.2	14,090.9	14,456.5	17,272.7	17,272.7	20,454.5	20,000	23,636.4	3류	30,000	12,500	13,000	15,500	36,000	19,000	18,000	22,500	22,000	26,000	4류	31,111.1	33,333.3	14,444.4	17,222.2	17,777.8	21,111.1	21,111.1	25,000	24,444.4	28,888.9	5류	32,500	15,000	16,250	18,375	30,000	23,750	23,750	28,325	27,500	32,500	마곡시(서대)	30944.4	35044.4	37044.4	44044.4	44044.4	59044.4	53044.4	62044.4	58044.4	73044.4	중도주택 중 아파트	1월 점검수수료(합)	1,796,232	1,796,232	2,140,711	2,340,711	2,575,190	2,575,190	3,008,679	3,008,679	3,448,168	3,448,168									
종대구별	3월(보통)		4월		5월		6월		7월		비고 -소방대상물의 종대구구분																																																																																												
	보통	특등	보통	특등	보통	특등	보통	특등	보통	특등																																																																																													
1류	8333.3	30,000.0	10833.3	12,816.7	13333.3	25,033.3	15833.3	18,750	18,333.3	21,666.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11호																																																																																												
2류	9,080.9	30,981.1	11,838.2	14,090.9	14,456.5	17,272.7	17,272.7	20,454.5	20,000	23,636.4																																																																																													
3류	30,000	12,500	13,000	15,500	36,000	19,000	18,000	22,500	22,000	26,000																																																																																													
4류	31,111.1	33,333.3	14,444.4	17,222.2	17,777.8	21,111.1	21,111.1	25,000	24,444.4	28,888.9																																																																																													
5류	32,500	15,000	16,250	18,375	30,000	23,750	23,750	28,325	27,500	32,500																																																																																													
마곡시(서대)	30944.4	35044.4	37044.4	44044.4	44044.4	59044.4	53044.4	62044.4	58044.4	73044.4	중도주택 중 아파트																																																																																												
1월 점검수수료(합)	1,796,232	1,796,232	2,140,711	2,340,711	2,575,190	2,575,190	3,008,679	3,008,679	3,448,168	3,448,168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p>	<p>■ 제16조(물품의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p>■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p>	<p>■ 제4장 제2절(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규모·양으로 제한) <p>■ 제4장 제3절(제한기준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제한 예외 규정(2개 항목이상 중복 제한 금지) • 지역제한+(실적제한, 기술보유상황제한) • 중소기업자+각호(실적제한, 기술제한, 지역제한, 설비로제한, 물품의납품능력 등) 																																																																																																						
<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제2장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p>	<p>■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붙임 6>

일상감사 요청서

건 명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p>1. 사업개요</p> <p>가. 사업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및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 『2016년 소방계획서』 시설안전팀-272호(‘16.02.29) -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 자체점검 실시 <p>나.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여 가락시장(가락몰 및 도매권역)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구조기준 적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미비사항 즉시 보수 및 보완을 통해 화재예방 등 소방시설 운영관리 업무에 만전 기함과 동시에 화재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 개선코자 함 <p>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6년 12월 20일까지</p> <p>라. 사 업 비 : 168,861천원(VAT 포함)</p> <p>2. 자체 검토의견</p> <p>가. 사업의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가락몰 및 도매권역)·양곡시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활동 추진 ○ 소방시설의 제 기능 유지 및 소방관련 법령 준수 ○ 청과·수산동 중도매인점포 구역 소화배관 기밀시험을 통한 소방시설 정상 기능 유지 및 수손피해 방지 <p>나. 사업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가락몰 소방점검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시행 중인 도매권역 소방점검과 통합 발주하여 기술용역의 품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 가락시장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제 기능 유지 등 소방시설 운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p>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소방계획서』에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및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사항 등에 적합함 <p>라. 기대되는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양곡시장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제 기능유지 및 소방관련 법령 준수 	

<붙임 7>

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시행	2016. 3. .	결 재 협조	담당	팀장
접수	2016. 3. .			
공개구분				
일련번호				

사업명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6년 12월 20일까지
추진부서	시설안전팀	담당자	4급 최유식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의견
		YES	NO	
예산	①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예산 집행에 적합
	② 사업계획과 일치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치함
	- 사업변경 계획 수립여부			해당 없음
	- 사업변경의 타당성 여부			해당 없음
	③ 현 시점에서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당함
	④ 중복투자 내지 예산 낭비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계약	⑤ 원가산출의 적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을 통한 원가산출 및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적정비용 적용
	① 계약 방법의 적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경쟁입찰로 적정함
	② 계약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함
	③ 원가산출의 적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을 통한 원가산출 및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적정비용 적용
조정내역 등	④ 계약서안 및 계약조건 등 적정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함 □ 사업개요 ○ 과업명 :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 내용 :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가락시장(가락몰 및 도매권역)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구조기준 적합여부 확인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동일실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6년 12월 20일까지 ○ 예산내역 - 예산과목 : 소방시설안전진단비(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지급수수료) - 소요예산 : 168,861천원(VAT 포함)			

<붙임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업명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부서명	시설안전팀	작성자	최 유 식	연락처	02-3435-0653
제출일자	2016. 3.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붙임 9>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 (2016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의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6360-4881~2
FAX 6360-4908

2016. 3.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	장	박 현 출 (서명 또는 날인)
(계약부서)	경영본부장		서 강 석 (서명 또는 날인)
	재무팀장		김 진 중 (서명 또는 날인)
	계약담당		우 재 수 (서명 또는 날인)
(발주부서)	건설안전본부장		김 승 호 (서명 또는 날인)
	시설안전팀장		박 성 규 (서명 또는 날인)
	감독담당		최 유 식 (서명 또는 날인)
			김 갑 제 (서명 또는 날인)